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17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13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4. 3. 26. 공포 및 2024. 9. 27. 시행)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4조제3항 신설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2024. 10. 15. ~ 2024. 11. 4.(20일 이상)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체육시설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.
2. “전용사용”이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”란 13세 미만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, 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및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주민을 위한 구”를 “구민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 1과”를 “별표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

호 중 “정부 기타”를 “정부,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금천구”를 “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5호가목 중 “10일전 까지”를 “10일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5일전 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1일전 까지”를 “1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사용도중”을 “사용 도중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, “설치 하고자”를 “설치하고자”로 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금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문화체육시설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용사용”이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“전용사용료”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</p> <p>3. “어린이”라 함은 13세미만의 자 및 초등학생을,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 및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설치)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제4조(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문화체육시설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용사용”이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</p> <p>3. “어린이”란 13세 미만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, 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및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설치) -----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<p>제4조(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민을 위한 구 단위 문화·체육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구 단위 행사 등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조(사용료의 징수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

제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, 서울특별시,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

-----.

주민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
(이하 “구”라 한다)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료의 징수) ① -----

----- 별표와 -----
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정부, 그 밖의 -----

제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----- 구 -----

2. ~ 5. (생략)

6.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사용료의 환급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환급

가. 사용개시일 10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전액 환급

나. 사용개시일 5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분의 70 환급

다.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분의 50 환급

② (생략)

제9조(사용증인의 취소 및 정지)

① 구청장은 사용증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에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의 환급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가. ----- 10일 전까지 -----

나. ----- 5일 전까지 -----

다. ----- 1일 전까지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증인의 취소 및 정지)

① -----
----- 어느 하나에

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시설물을 파손·분실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1조(부대설비 설치)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4조(위탁관리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-----
사용도중-----

-----.

제11조(부대설비 설치) -----
사용기간 중 -----
----- 설치하고자 --

-----.

제14조(위탁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금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청

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
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
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
위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,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구 체육회에 위탁근거 신설 등 체육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발생 사항은 없으므로, 「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장은경
연 락 처	2627 - 1426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. 1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51호, 2024. 1. 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1.11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1.7.16., 2006.3.22., 2024. 1.11.>

1. “문화체육시설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.
2. “전용사용”이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“전용사용료”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”라 함은 13세미만의 자 및 초등학생을,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 및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)

-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을 우선하여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.<개정 2024.1.11.>
-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민을 위한 구 단위 문화·체육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구 단위 행사 등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을 개설·운영할 수 있으며,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0.3.25.>

제5조(사용시간 등)

-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주간 : 06:00 ~ 18:00
2. 야간 : 18:00 ~ 22:00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의 징수)

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체육시설사용료의 변동추세
2.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

제7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01.7.16., 2004.12.28., 2010.11.23., 2019.7.19., 2020.7.17., 2020.9.18., 2021.9.29.>

1. 국가, 서울특별시,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장애인,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, 청소년 또는 어린이,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
3. 지역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
4. 삭제<2020.7.17.>
5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.
6.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신설 2021.9.29.>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람
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③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<신설 2019.7.19.>

제8조(사용료의 환급)

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3.22., 2007.7.25., 2019.7.19., 2021.9.29., 2024.1.1.1.>

1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급
 2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(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)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급
 3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
 4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
 5.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환급
- 가. 사용개시일 10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전액환급
- 나. 사용개시일 5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분의 70 환급
- 다.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분의 50 환급

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의한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.<신설 2024.1.11.>

제9조(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)

①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2.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에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시설물을 파손·분실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7.9.>

제11조(부대설비 설치)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2조(지도자 배치)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13조(시설물 관리)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관리)

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개정 2024.1.11.>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계 법령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3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-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6.]